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1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4.

발 의 자:이용우·한창민·복기왕

신장식 · 김남근 · 민병덕

정혜경 · 임미애 · 김태선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음.

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·체불하거나,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
이에, 국가나 지방자체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(건설공사 발주 포함)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

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 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(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)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.

아울러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(前月)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,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44조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0호의 "발주자"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는 "도급인"이라 한다)는 도급계약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는 "임금비용"이라 한다)을 다른 사업비와구분하여 그 사업을 도급 받은 자(이하 이 조에서는 "수급인"라 한다)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금비용은 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.
- 1. 국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 부기관
-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

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
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의 도급인
-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 수급인이 전월(前月)[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(月)에 건설공사가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]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(이하 이 조에서 "인건비용예치"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⑥ 도급인은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 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도급인·수급인·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⑧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, 인건비용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, 인건비용예치의 방법·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

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제109조제1항 중 "제44조"를 "제44조제1항 · 제4항"으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42조"를 "제42조, 제44조제2항·제3항·제6항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급 사업의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44조(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	제44조(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				
지급) ① (생 략)	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				
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	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			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				
	도급하는 자(「건설산업기본				
	법」 제2조제10호의 "발주자"를				
	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는 "도				
	급인"이라 한다)는 도급계약서				
	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				
	이 조에서는 "임금비용"이라 한				
	다)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				
	그 사업을 도급 받은 자(이하				
	이 조에서는 "수급인"라 한다)				
	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				
	임금비용은 월 1회 이상 지급하				
	<u> 여야 한다.</u>				
	<u>1. 국가</u>				
	2. 지방자치단체				
	3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				
	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				
	및 준정부기관				
	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				
	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				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공사 및 지방공단

- 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 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 관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의 도급인
-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라 수 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 수급인이 전월(前月)[임금 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(月)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 외한다]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지급받은 임금비용을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(이하 이 조에서 "인건비용예치"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⑥ 도급인은 제3항에 따른 임

<신 설>

<신 설>

제109조(벌칙) ① 제36조, 제43조, 제109조(벌칙) ① ------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 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

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 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<u>관리하고, 도급인·수급인</u>·근 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 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 템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하 여야 한다.

⑧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, 인건비용 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, 인건비 용예치의 방법・절차 및 정보 시스템 구축・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제1항 • 제4항-----

6조,	제(65조,	제723	2	또는	제	76
조의:	3제	6항을	위반	한	자는	. 3	년
이하	의	징역	또는	3	천만원	빌	0]
하의	범	금에	처하다	}_			

② (생략)
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<u>제4</u> <u>2조</u>, 제48조, 제66조, 제74조 제7항ㆍ제9항, 제76조의3제2 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, 제 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
- 3. 4. (생략)
- ③ (생 략)

,
②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
<u>이</u>)
②
1. (현행과 같음)
2 <u>제4</u>
<u>2</u> 조, 제44조제2항·제3항·제
<u> 6항</u>
3.・4. (현행과 같음)
③ (혀해과 간은)